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14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3

I. 개요

1.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14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19.

(3) 회 부 일 : 2026. 1.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전용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 공제요건 -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공제금액 - 배우자 중 한 명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하되, 금액은 ①, ② 중 더 큰 금액 ①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아내가 같은 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같은 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개정안은 부부가 동일한 위난으로 「민법」 제30조¹⁾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²⁾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

1)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최대한도)하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은 공제(최소한도)하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른 인적공제보다 비교적 높은 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배우자 간 부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 수평적 자산 이전으로 해당 상속재산은 추후 자녀 세대로 이전될 때 과세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후 남아 있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 보장 측면을 고려한 것임.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A)	2억원 (비거주자에게도 적용)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u>최대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u> - <u>최소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더라도 5억원 공제</u>
기타 인적공제 (B)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연로자(65세 이상)공제: 5,000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통계청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A)와 기타 인적공제(B) 합계액 5억원 미만 시 5억원 공제

$$\text{한도금액} = (A - B + C) \times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그런데,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에서는 부부가 「민법」 제30조³⁾에 따라 동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유가족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항공기, 선박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① 사망 시점의 판단이 어려워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② 병원 후송 중 혹은 병원에서의 사망 등으로 시점의 확인이 가능하여 시차를 두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시차를 둔 이시(異時) 사망(②)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①)에 대하여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양자 간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게 됨.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국세청)]

집행기준

19-17-6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3)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동시 사망 추정 의 경우에 대하여도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와 같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과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모를 동시에 잃은 유가족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동시 사망과 이시(異侍) 사망 간 과세상 차이를 개선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법 제19조제4항4, 5억원)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여 일괄공제(5억원)와 함께 상속세에 대한 기본공제로서 일종의 면세점 기능⁵⁾을 하는데, 동시 사망 추정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납세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는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는 달리, 배우자공제 최대한도(법 제19조제1항, 30억원 또는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동일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고려, 남아 있는 배우자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text{한도금액} = (A - B + C) \times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5) 이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부 동시 사망 시에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개정안은 부부 동시사망 추정 시 배우자공제⁶⁾ ① 최대한도(제19조제1항)와 ② 최소한도(제19조제4항) 규정 모두를 적용하는 것인데,

① 최대한도(30억원 또는 법정상속분)는 배우자 공제의 취지(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남아 있는 배우자의 생계안정 등)를 고려하여 현행법상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시 사망 시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② 최소한도(5억원)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여 많은 납세자들에게 상속세의 기본 공제로서 면세점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부부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었다 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text{한도금액} = (A - B + C) \times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문 의 처

02)6788-5161
